친환경 위장제품 적발사례와 개선내용

2017. 4.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1. ‘친환경’ 등 허위·과장(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사례

1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 ····· 1

2 천연 자연 허위·과장 표시광고 ····· 3

3 무독성 무검출 등 절대적 표현 허위·과장 표시광고 ····· 5

2. 인증마크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점검결과

4 「환경마크」 및 「환경표지인증서」 도용 ····· 6

5 「환경마크」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 8

6 「GR마크」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 9

▣ 친환경 등 허위·과장(부당한 표시·광고) 점검결과

○ 기　간 : 2016년 9월 ~ 2017년 1월

○ 점검반 : 부패척결추진단, 환경부, 식약처

○ 결　과 : 총 103건 적발(생활용품 등 88, 화장품 15) ⇒ 행정처분 58건 완료, 45건 진행 중

1

사례1-1 위해우려제품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 [광고행위 시정명령, 환경부]

- 계면활성제 및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아 냄새와 인화성이 없는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코팅제는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지정했기 때문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라 할 수 없음

- 그러나, '환경친화적' 이라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다고 오인하여 남용할 우려가 있음

사례①-2 생활용품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조명

국내산 FULL LED 모듈이 선사하는 떨림 현상이 없는 깨끗한 빛으로 공간을 밝혀보세요. **확산 아크릴을 소재를 적용한 커버**는 LED가 가진 밝은 빛을 공간 구석구석 퍼뜨려주어 여러분의 공간을 눈부심 없는 풍성한 빛으로 채워줍니다. 눈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환하고 편안한 빛, 함께 누려보세요!

LED조명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분류되고 있음에도, 본 광고의 LED조명은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법령미비로 제재 불가]

- LED 전구는 일반 전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적고 제품 수명이 길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사유인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광고는 환경표지 인증요건인 에너지 절약이 아닌 '눈 건강'을 강조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건강에 유익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상 '친환경' 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광고행위 중지 등 제재 곤란

현 행	개 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상 '친환경'에 대한 용어 규정 없음 ■ 그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품은 적발되어도 제재 어려움	■ '친환경제품' 용어정의 신설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 -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를 규정 ■ '친환경' 용어 사용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환경성 개선의 범주를 명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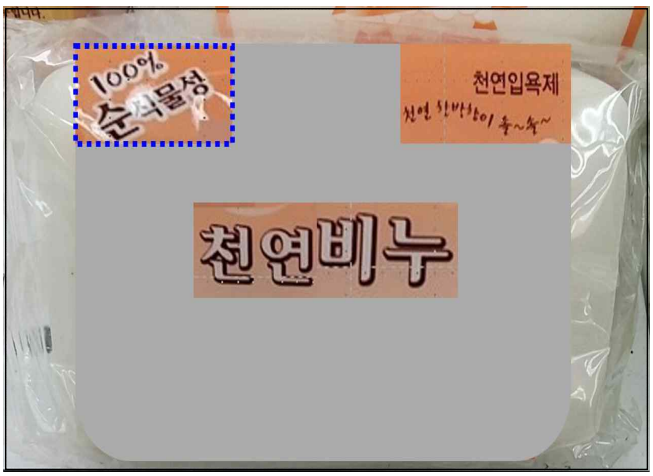
사례2-1 화장품



화장용 오일 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 [광고행위 시정명령, 식약처]

- 해당 제품의 전(全)성분 함량표 확인 결과, 합성원료인 '1,2-헥산디올'이 1.8%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품 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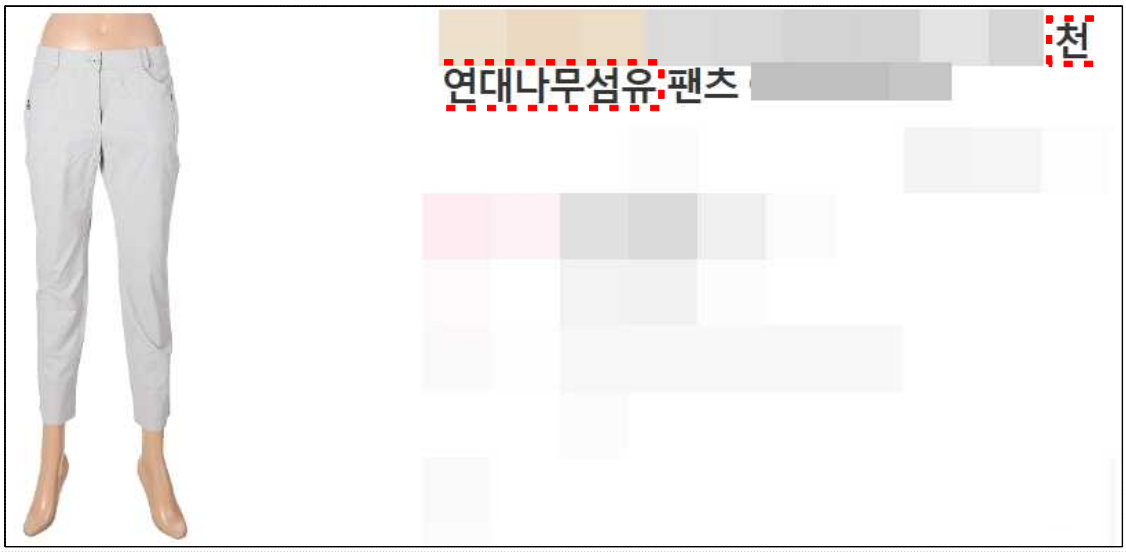
사례2-2 생활용품



비누의 식물유래 성분이 93%임에도 불구,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 환경부]

- 해당업체에서는 식물에서 유래된 순 비누분이 93% 함유된 것을 근거로 '100% 순식물성', '천연'으로 광고
- 제품 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

사례②-3 생활용품



의류 직물조성 중 33%만이 대(竹)나무 유래 섬유임에 불구,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과장광고 [그러나,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불가]

- 해당제품의 직물조성은 나일론 61%, 레이온 33%, 폴리우레탄 6%
- 전체 직물 중 레이온(33%)만이 대나무 성분이지만, '천연대나무섬유'라는 표기는 제품 전체가 천연대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상 천연 성분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양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천연제품'이라고 광고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광고행위 중지 처분 불가

현 행		개 선
■ 「화장품법」상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 그에 따라, '천연화장품' 허위·과장 표시 광고 제품은 적발되어도 제재 어려움	⇨	■ '천연화장품' 용어정의 신설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라고 정의
■ 「화장품법」 상 천연화장품에 대한 공인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 보호 미흡		■ 공인인증제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선택권 보장
■ 「환경기술산업법」상 '천연', '자연' 등 원료표시 사용기준 없음	⇨	■ '천연', '자연' 등 표시·광고 시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3

사례3-1 위해우려제품



가정용 페인트에 일부 중금속 미포함을 이유로 '유해물질 및 중금속 무검출'이라고 과장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 환경부]

- 4대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6가 크롬) 불검출 근거로 '유해물질 및 중금속 무검출' 표기

사례3-2 생활용품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에 일부 유해화학물질 불검출을 이유로 '인체무해'라고 과장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 환경부]

- 특정 불소화합물*(PFOA, PFOS) 불검출을 근거로 '인체무해' 라고 표기

현 행	개 선
▪ 「환경기술산업법」상 '무독성', '무공해' 등 절대적표현 사용기준 없음	▪ 용어 사용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성분명을 명시

▣ 인증마크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점검결과

○ 환경표지 무단사용 : 27건 적발 ⇒ 수사의뢰 10건, 행정처분 17건 완료

○ 환경표지 인증기준 미달 : 33개 적발 ⇒ 인증취소 24건, 행정처분 9건 완료

○ GR마크 인증기준 미달 : 3개 적발 ⇒ 인증취소 3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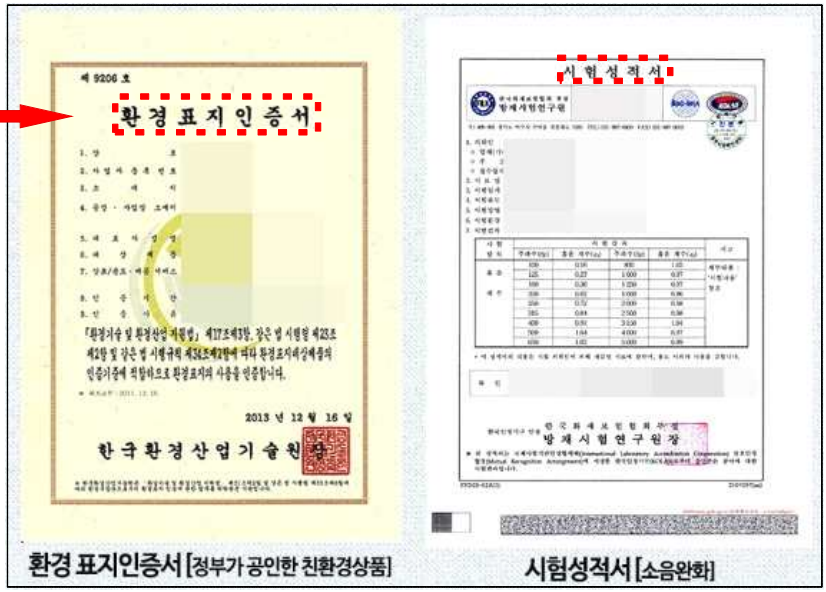
4

사례4-1 환경표지 무단사용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 [수사의뢰(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 위반), 환경부]

사례④-2 환경표지 무단사용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 [수사의뢰(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 위반), 환경부]

5

사례5-1 환경표지 인증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에 발암성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

[인증취소, 환경부]

- 벽 및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두께:14㎜)로,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결과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 초과
 (기준치 0.05㎎/㎡・h 이하 ; 시험결과 0.51㎎/㎡・h)
- 폼 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본 제품은 WHO 권고수준*을 약 3배 초과

사례5-2 환경표지 인증제품



목재용 도료에 유해물질인 VOCs가 기준치의 약 4배 가량 검출 [인증취소, 환경부]

- 열화・풍화 방지를 위해 목재에 사용되는 도료로,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결과 VOCs* 함량이 인증기준 초과
 (기준치 300g/L 이하 ; 시험결과 390.3g/L)

6

사례6-1 GR마크 인증제품



주방용 비누에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 알칼리*가 기준치 초과 검출 [인증취소, 국가기술표준원]

- 고형 주방비누(폐식용유 활용)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유리 알칼리가 인증기준 초과 (기준치 0.3% 이하 ; 시험결과 1.2%)

사례6-2 GR마크 인증제품



놀이터용 바닥재의 내구력 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 [인증취소,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폐타이어 활용)의 인장강도, 신장률, 한계하강높이 시험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기준치 인장강도 1.0 MPa 이상, 신장률 60% 이상, 한계하강높이 1,300㎜ 이상 시험결과 인장강도 0.5 MPa, 신장률 35%, 한계하강높이 1,100㎜)